

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'99. 9.

제 출 자 : 동두천시장

제안이유

- 조례·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의하여 시청 및 동청사의 설계 기준과 규모를 청사의 용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고 동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.

주요골자

- 청사의 설계기준과 규모를 정해진 기준과 규모에 따르도록 하되 청사의 용도에 따라 신축성 있게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47조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다음 각호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적합하도록하되 청사의 용도에 따라 달리 정할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7조(청사의설계)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.</p> <p>1~7 (생략)</p>	<p>제47조(청사의설계)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다음각호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적합하도록 하되 청사의 용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</p> <p>1~7 (현행과 같음)</p>